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45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이만희 · 이달희 · 이소희
서천호 · 조배숙 · 김태호
백종헌 · 최보운 · 김기웅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혜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근무 및 연금 가입 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체류 기간 중 미납된 장기의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납부(추납)하여 단기간에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까지 연금액 가산 혜택(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연금 가입 및 추납 자격 판단 시 실제 국내 거주 여

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행정 실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여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허술하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에 있어서도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주요내용

가. 외국인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 신설(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액 가산 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신청을 제한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 ‘월 단위’ 확인 의무화(안 제126조 제7항 신설 및 제8항)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후납부 자격 인정 및 연금 급여 지급 시 출입국관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산정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 등에서 제외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자격 취득 신고”를 “자격 취득 신고 및 공단의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으로 한다.

②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여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u><신 설></u>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u>②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연</u> <u>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50조</u>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u> <u>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적용하</u> <u>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u> <u>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u> <u>이 국민연금 급여에 상응하는</u> <u>급여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부</u> <u>양가족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u> <u>정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u> <u>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u> <u>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u> <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 ④</u> (생 략) <u><신 설></u>	<u>③ ~ 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⑥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u> <u>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u> <u>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u> <u>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보</u> <u>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제</u> <u>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u>

<u><신 설></u>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u>자격 취득 신고</u>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⑦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u>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여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u> ⑧ -----<u>자격 취득 신고 및 공단의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u>----- -----.
--	---